

의안번호	제620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1월 1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0

제출연월일 : 2021년 1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상위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도지사 위임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도지사 소속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안 제7조의2)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의2)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사회재난 등으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를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1명을 두되 가축방역부서의 해당 협의안건을 관장하는 팀

장(사무관)으로 한다.

3.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가.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나.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

4. 협의회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나.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지회·협회)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자(者)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2의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가.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사회재난 등으로 -----.
<신 설>	제7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를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1. <u>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2. <u>협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1명을 두 되 가축방역부서의 해당 협의 안건을 관장하는 팀장(사무관) 으로 한다.</u> 3. <u>협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u> 가.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 당과장 나.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 4. <u>협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 사가 위촉한다.</u> 가. 「수의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의사 나.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지 회·협회)장 ③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u> <u>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u> <u>다.</u> <u>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u> <u>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u> <u>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u> <u>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u> <u>자(者)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u> <u>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u> <u>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u> <u>또는 감정을 한 경우</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u> <u>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u> <u>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u> <u>促)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u> <u>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u> <u>는 경우</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u>5. 제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u> <u>⑥ 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u> <u>1. 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u> <u>가.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u> <u>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u> <u>2.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3. <u>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u> ⑦ <u>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관련법령 발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3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 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 등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

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 신설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 신설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평가액
3.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평가액
4. 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의 평가액
5.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
6.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

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 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7(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 신설

-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제6조(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6. 가축방역지원단원의 교육 및 육성
 7.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에 따른 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가축 밀집사육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
2.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가축방역지원단원에 대한 보상
3.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가축사육 제한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